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 정원의 자격시험) ① ~ ③ (생 략)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 정원의 자격시험)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 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u>합격일로부터 2년 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1차 시 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 는 제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공고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5조 중 “일간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을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28조 중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한국 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 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 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 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자 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u>일간신 문</u>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 ----- ----- ----- ----- ----- ----- 인터넷 <u>홈페이지</u> -----.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② (생 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16 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응시수 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해야 한다. 1. · 2. (생 략) 3. <u>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 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 수료의 전부</u> 4. <u>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u>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u> --- ----- ----- 4. <u>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u>

<u>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u> <u>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u> <u>한 수수료의 100분의 60</u> 5. <u>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u> <u>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u> <u>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u> <u>100분의 50</u> 6. ~ 8. (생 략) ④ (생 략)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 인력공단은 영 제105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가 결정되면 <u>모든 응시자가 알</u> <u>수 있는 방법으로</u> 공고하고, 합 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u>험시행일 10일</u> ----- ----- -----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 ----- ----- ----- <u>인터넷 홈페이지 등</u> <u>에</u> ----- ----- -----.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를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을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수료) ①·②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③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 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 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u>	2. <u>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u>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u>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 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 의 60</u>	4. <u>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 험 시행일 10일</u> ----- ----- ----- ---
5. <u>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 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u>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20일”을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u>원서 접수기간에</u>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u>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u> <u>터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u> <u>험 시행일 20일 전까지</u> 응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 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u>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u> <u>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u> <u>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u> <u>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u> <u>의 50</u> 6. ~ 8. (생 략)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u> -- ----- ----- 4. <u>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u> <u>험 시행일 10일</u> ----- ----- ----- ----- <u><삭 제></u> 6. ~ 8.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를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을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응시원서) ①·② (생략)	제32조(응시원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③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u> <u>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u> <u>한 수수료의 전부</u>	3. <u>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u> -- ----- -----
4. <u>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u> <u>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u> <u>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u> <u>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u> <u>의 60</u>	4. <u>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u> <u>험 시행일 10일</u> ----- ----- ----- ---
5. <u>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u> <u>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u> <u>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u> <u>수수료의 100분의 50</u>	<삭 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기간을 다음 1회에서 2년 동안 실시되는 시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를 “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① (생 략)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u>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u>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u><단서 신설></u> ③ · ④ (생 략)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u> <u>다만, 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을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응시원서) ①·② (생 략)	제13조(응시원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u>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 한 수수료의 전부	3. <u>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u> --- ----- -----
4. <u>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 지</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u>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 험시행일 10일</u> ----- ----- -----
5. <u>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 일 전까지</u> 접수를 취소하는 <u>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 0분의 50</u>	<삭 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등의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을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 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 ----- ----- ----- ----- ----- ----- ----- ----- <u>한국산업인력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 ----- ----- ----- ----- -----.

1. · 2. (생 략) 3. <u>응시원서 접수기간에</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u>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u> <u>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u> <u>지</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 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u>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u> <u>험시행일 10일 전까지</u> 접수를 <u>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u> <u>의 100분의 50에</u> 해당하는 금 <u>액</u> 6. ~ 8. (생 략) ⑤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u> --- ----- -- 4. <u>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u> <u>험시행일 10일</u> ----- ----- ----- -----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검사관 및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다음 1회에서 2년 동안 실시되는 시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 중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검사관 전형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120조제3항 중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산물검사관 전형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농산물검사관 및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는 제10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u>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u> <단서 신설> ④ (생략) 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u>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u> <단서 신설>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u> ----- ---. <u>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u> ----- ---. <u>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이 2회 미만으로</u>

④ (생 략)	<u>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 다.</u> ④ (현행과 같음)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기간을 다음 1회에서 2년 동안 실시되는 시험으로 확대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다음 회의 시험에만”을 “해당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69조제6항제4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생략)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u>다음 회의 시험 에만</u>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② ----- ----- ----- <u>해당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 년 동안</u> ----- ----- <u>. 다만, 해당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어지는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1회를 면제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수수료) ① ~ ⑤ (생략)	제69조(수수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 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u>100분의 50</u>	4. ----- ----- ----- <u>100분의 60</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 면제기간을 다음 1회에서 2년 동안 실시되는 시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수험자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다음 해당 시험 1회를”을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해당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실시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 ② (생 략) 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 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3. (생 략)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u>100분의 50</u>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100분의 60</u>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다음 1회에서 2년 동안 실시되는 시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를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의료 통역 능력 검정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① ~ ④ (생 략) ⑤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 해서는 <u>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u> <u>정하여</u>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u><단서 신설></u> ⑥ · ⑦ (생 략)	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u> <u>날부터 2년 동안</u> -----. <u>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u> <u>날부터 2년 동안 의료 통역능력</u> <u>검정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u> <u>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u> <u>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4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u>100분의 50</u>	4. ----- ----- ----- <u>100분의 60</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기간을 다음 1회에서 2년 동안 실시하는 시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7호 중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를 “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철회”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0일”을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로, “전부”를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수수료) ① (생 략)	제4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0의 수수료를 반환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원서접수기간에</u> 접수를 철회 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 부	4. <u>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u> 접 <u>수를 취소</u> ----- --
5. 시험시행일 <u>20일</u> 전까지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u>전부</u>	5. ----- <u>19일 전부터</u> 시험 <u>시행일 10일</u> ----- ----- <u>100분의 60</u>
6. <u>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u> 접 <u>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u> <u>수수료의 100분의 50</u>	<삭 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1년까지로 한다”를 “2년까지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5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 ③ (생략)	제6조(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u>1년까지</u> 로 한다.	④ ----- ----- ----- ----- ----- <u>2년까지</u> <u>로 한다.</u>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중 “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을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34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원서 접수기간에</u>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2. <u>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u>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u> <u>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u> <u>지</u>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 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 는 금액	4. <u>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u> <u>험 시행일 10일</u> ----- ----- ----- -----
5. <u>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u> <u>일 전까지</u> 접수를 취소한 경 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u>해당하는 금액</u>	<삭 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험시행일”을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다목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험시행일 10일”을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① (생 락)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 (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 ----- ----- -----.
1. · 2. (생 락)	1. · 2. (현행과 같음)
3. <u>응시원서 접수기간에</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u>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u> --- -----
4. <u>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u>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4. <u>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 험시행일</u>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 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 한 수수료의 <u>100분의 50</u> 을 반환 한다.	③ ----- ----- ----- ----- ----- <u>100분의 60</u> ----- -----.